

【 3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1. 24.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시대적 개념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균무를 유도함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96. 12. 31. 대통령령 제15244호)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고자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한해 병가를 얻지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토록 함. (안 제18조 제3항)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함. (안 제19조 제3항)
-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함(안 제20조 제2항)
-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시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함. (안 제20조 제3항)
- 풍수해, 화재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9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주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2”를 “제25조의 2”로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 제13조(근무시간) ①----- ----- ----- ----- -----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 점심시간 ----- ----- ----- 점심시간----- -- . |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u>근속기간별</u>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제16조의2(토요일전일근무제) ①주민 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 근속기간 | 연가일수 |
|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6년이상 | 23일 |
| 재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 <p>②----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한다.</u> | 제21조(병가)----- ----- ----- ----- ----- <u>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u> <u>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u> |
| 1 · 2 (생략) ②~③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 제22조(공가)----- ----- ----- -----. |
| 1. ~ 7. (생략) <u><신 설></u> | 1. ~ 7. (현행과 같음) <u>8. 올림픽 ·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u> |
|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생략) ⑥ 군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 ⑧ (생략) <u>< 신 설 ></u> |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재직</u> ----- ----- <u>장기 재직 휴가</u> ----- ----- <u>재직기간</u> ----- -----. |
|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 <u>30일</u> ----- -----. |

| | |
|--|---|
| <p>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 <p>제25조의2(국외여행) (현행 제26조의2와 같음.)</p> |
| <p><u>〈 신 설 〉</u></p> <p>제26조(겸직 허가) (생략) <u>〈 신 설 〉</u></p> | <p><u>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u></p> <p>제26조(겸직 허가) (현행과 같음) <u>제 5 장 정치운동</u></p>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통령 김영삼

1996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김한규

① 대통령령 제15,244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위원장 및 총무처장과 협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토요전일근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편의의 증진과 입

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을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나.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활·조비 및 외출은 누가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활·조비 및 외출은 누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2.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20조제6항중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거나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일을 수 있다.

제22조 단서중 "1인 이상"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國家公務員服務規程 改正理由

公務員의 합리적 服務管理를 통하여 誠實한 勤務를 誘導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公職風土를 造成하고, 實績給制度의 定着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現行制度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특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制服着用에 관하여는 總理令 또는 部令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總務處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도록 함(令 第8條의2第3項).

나. 土曜全日勤務制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土曜日의 終務時間 및 점심시간을 정함(令 第9條第1項但書·第2項 및 第13條).

다. 年暇日數는 지금까지 勤績期間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在職期間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年間 病暇를 가지 아니한 公務員과 年暇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年暇補償費를 지급받지 못한 殘餘 年暇日數자 있는 公務員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日의 年暇日數를 加算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및 第3項).

라. 遅參·早退 및 外出 8時間은 年暇 또는 病暇 1日로 計算하도록 하여 公務員의 服務를 時間單位로 管理함으로써 公務員의 誠實勤務를 誓護하도록 함(令 第17條第2項 및 第18條第1項).

마. 6日을 초과하는 病暇는 이를 年暇日數에서 공제함(令 第17條第3項).

바. 國家의인 行事에 참가하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公暇를 許可하도록 하고, 風·水害등의 災害로 被害를 입은 公務員과 灾害地域에서 自願奉仕活動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5日이내의 災害救護休暇를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第7號의2 및 第20條第8項).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6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수성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김한규

◎대통령령 제15,245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 공무원보수규정中·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 제한기간

제30조의2제2항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22,000원"을 "23천원"으로, "23,000원"을 "24천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4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정리직공무원"을 "법정경위직 공무원"으로, "행정직공무원·정리담당법정직공무원"을 "행정직·법정 경위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중앙 교육연수원"을 "교육행정연수원"으로 하며, 동표의 별표 12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통일연수원"을 "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6·별표 8·별표 9·별표 9의2 및 별표 10 내지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공무원별란의 제5호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16제1호의 경력란의 나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등 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별표 16제2호나목의 제목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동목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의 환산율은 "8한"을 "8할. 다만, (1의2)의 경력은 5한"로 한다.